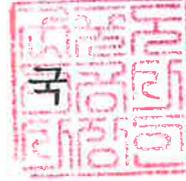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5년 6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2 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조직) 제1항 중 ‘건강증진부’를 ‘스포츠레저부’로 한다.

제10조(직무) 제2항 중 ‘건강증진부장’을 ‘스포츠레저부장’으로 한다.

제12조(경영기획실) 제9호 중 ‘노무 및 후생복지(공동 직장어린이집, 본사 구내식당 등)’을 ‘노무 및 후생복지’로 한다.

제14조(체육관리부) 제1호 중 ‘부곡체육시설(본사 사육관리 포함)’을 ‘부곡 체육시설’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스포츠레저부) 스포츠레저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시민체육광장, 소규모 체육시설, 송죽다목적체육관, 송정체육공원, 초막골 캠핑장 시설(이하 “스포츠레저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2. 스포츠레저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

3. 스포츠레저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
4. 스포츠레저시설 관련 고객(민원)처리에 관한 사항
5. 스포츠레저시설에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6. 스포츠레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스포츠레저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8. 스포츠레저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
9. 공공근로(공익요원)관리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스포츠레저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. 7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「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 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“건강증진부장”을 “스포츠레저부장”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조직)</p> <p>① 사장은 소관 사무를 분장하며 사장 직속으로 경영기획실, 안전감사부를 두고 시설관리본부 소속하에 체육관리부, <u>건강증진부</u>, 교통관리부, 환경자원부와 개발사업본부 소속하에 개발사업부, 정비사업부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조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, <u>스포츠레저부</u>,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직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체육관리부장, <u>건강증진부장</u>, 교통관리부장, 환경자원부장은 시설관리본부장을 보좌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직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, <u>스포츠레저부장</u>,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경영기획실)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노무 및 후생복지(공동 직장어린이집, 본사 구내식당 등)</u>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8. (생략)</p>	<p>제12조(경영기획실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노무 및 후생복지</u>----- -----.</p> <p>10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

제14조(체육관리부)

1. 국민체육센터, 복합생활스포츠타운, 부곡체육시설(본사 사옥관리 포함), 송정복합체육센터(이하 “체육관리 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.

2. ~ 10. (생략)

제14조(체육관리부)

1. -----, 부곡체육시설, -----

-----.

2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건강증진부) 건강증진부는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시민체육광장, 소규모 체육시설, 송죽다목적체육관, <신 설>, 초막골캠핑장 시설(이하 “건강증진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.

2. 건강증진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

3. 건강증진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

4. 건강증진시설 관련 고객(민원) 처리에 관한 사항

5. 건강증진시설에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
6. 건강증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건강증진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
8. 건강증진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

9. (생략)

10. 그 밖에 건강증진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제15조(스포츠레저부) 스포츠레저부는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-----
-----, 송정체육공원, -----
----- (“스포츠레저시설”-)
-----.

2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3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4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5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6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7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8. 스포츠레저시설 -----

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스포츠레저시설 -----